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터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m)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접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허위문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당첨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발표일)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2025.10.02.(예정)]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제작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최고 25층, 11개동, 총 931세대 중 일반분양 17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 분		44A	44B	49A	49B	49C	74	84A	84D	계
국가유공자 등	배정세대	1	—	—	—	1	—	1	—	3
	예비	5	—	—	—	5	—	5	—	15
장기복무제대군인	배정세대	—	—	1	—	—	—	1	—	2
	예비	—	—	5	—	—	—	5	—	10
10년 이상 복무군인	배정세대	—	—	—	1	—	—	—	1	2
	예비	—	—	—	5	—	—	—	5	10
중소기업 근로자	배정세대	—	1	1	—	—	1	—	—	3
	예비	—	5	5	—	—	5	—	—	15
해외건설 근로자	배정세대	1	—	1	—	—	—	1	—	3
	예비	5	—	5	—	—	—	5	—	15
서울시 장애인	배정세대	1	—	1	—	—	—	—	—	2
	예비	5	—	5	—	—	—	—	—	10
경기도 장애인	배정세대	—	—	1	—	—	—	—	—	1
	예비	—	—	5	—	—	—	—	—	5
인천시 장애인	배정세대	—	—	—	1	—	—	—	—	1
	예비	—	—	—	5	—	—	—	—	5

■ 일정계획

구 분	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정)	2025.10.02. (목)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특별공급 신청일(예정)	2025.10.14. (화)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자 발표일(예정)	2025.10.22. (수)	청약홈(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인·허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건본주택에서 청약접수를 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온라인 청약 접수(09:00~17:30)] 단,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특별공급 접수 당일, 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시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 대상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예정) 현재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추천 받으신 분**
(제36조 제9호에 따른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제1순위 요건 충족 필요)

■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요건

-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③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기준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 유의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가 각각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당첨된 경우 신청 접수일(분 단위)이 빠른 당첨(접수일이 같으면 연령이 많은 자의 당첨)만 유효한 당첨으로 하고 다른 당첨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여부 확인결과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해당기관에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를 선정합니다.

- ### 3.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 02)6245-5100